

꽃게하는 세상을 아름답습니다

2010 정기회원총회



● 때: 2010년 1월 25일(월) 오후 7:30

● 곳: 함께하는 거창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www.gcngo.org
함 게 하 는 거 창

670-808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전 화 055-942-1117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 1월 25일 총회에 참석하실 때 이 자료집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홀로서기와 뿌리내리기



상임대표 신 용 군

요즘 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신지요. 무엇보다도 날씨가 추워지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한국에도 복지 시스템이 더 잘 정비되어야 될 터인데, 최근 들어 자꾸 복지 재정이 줄어드니 마음이 편지만은 않습니다.

다시 올해 총회를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거창이 출범하고 여섯 번째 맞이하는 총회입니다. 가장 감사할 일은 회원님들의 참여입니다. 그동안 회원은 꾸준히 늘어왔고 마음을 담아 보내주시는 회비로 재정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마음을 써 주시고 의견을 주시고 직접 참가해 주셨기에 지금의 함께하는 거창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축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총회는 함께하는 거창의 작은 전환점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은 함께하는 거창이 지역단체로서 홀로서기를 실험한 기간이었습니다. 결과는 회원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나름대로 성공하였습니다. 되돌아보면 결코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었고, 그렇게 편하게만 흘러간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홀로서기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전환기가 되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거창이 다

루는 일이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사안 중에, 거창 연극제 문제와 승강기대학 문제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해결이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함께하는 거창이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보다 많은 시간과 정열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길고 정밀한 조사과정, 사안의 심각성과 복잡성, 해결의 어려움 등. 또한 우리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모임의 특별회계에 포함된 장학 사업이 좋은 예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지난 5년이 홀로서기였다면, 앞으로 5년은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뿌리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일, 그래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일, 즉 매우 직접적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보도블록, 간판, 주차장, 운동길이나 등산로, 학원비 등 작고도 직접적인 일을 챙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일은 당연히 지속될 것이지만, 위에서 든 새로운 영역으로 활동을 넓혀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뿌리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작은권리찾기모임에서 향교 앞 공원조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사안과 같은 사업이 적절한 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은 이러한 일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새로운 몇 가지 일들이 시도될 것입니다. 회원토론회와 사안별 총대(總代)제도, 두어 가지 활동 영역의 확대 모색, 몇 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구상 등.

그렇다고 급하게 갈 생각은 없습니다.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단어가 생 각납니다. 호랑이처럼 예리하게 사물을 관찰하되, 소처럼 신중하고 곳곳하게 실행해나갈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하는 거창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움이 더해 가면 좋겠습니다. 잘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뿌리내 리기도 그렇고, 영역의 확대, 새로운 방법의 시도도 그렇습니다. 방향을 설정 하고 가 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지겠지요.

추위도 너무 추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후가 되면, 틀림없이 새싹이 돋아날 테니까요. 그런 희망을 품는 올해의 함께하는 거창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회 순 서

식전 행사 - 2009년을 돌아보며

- I부 -

사 회 : 백철우 사무국장

- 1.개회선언
- 2.공동대표 인사말
- 3.감사보고
- 4.2009년 결산보고
- 5.2009년 사업보고
- 6.2010년 사업계획(안) 보고, 의결
- 7.2010년 예산(안) 보고, 의결
- 8.기타 안건 토의
- 9.폐회선언

- II부 -

- 1.내빈인사
- 2.떡담나누기

감 사 보 고

감사 정연탁

기록된 내용
한 장 한 장 넘깁니다.
그날그날 쓴 내역과 매달 장부와
대조합니다.
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통장
과 대조합니다.
꼼꼼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5000원에서 몇 만원까지
정성스런 회원님들의 후원금
그에 보답하고자
알뜰살뜰 살아준 사무실의 노력
정책국의 여러 활동

대조하는 장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거창 군민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거창

그 이름이 걸맞다
그 이름이 아름답다
느껴졌습니다.

경인년 을 한해
선거 등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있습니다.

함께 나눈 확신!
사소한 차이를 넘어선 연대!
더욱 가열찬 활동!
기대합니다.



2009 정기 회원총회 회의록

- 1.회의일시:2009년 1월 20일(화) 오후 7시 30분
- 2.회의장소:함께하는 거창
- 3.회의안건:-.200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
 -.임원개선
- 4.출석회원:128명 중 출석 28명, 위임 4명
- 5.회의내용
 - 1)백철우 사무국장 성원 보고를 하다.
 - 2)신용균 공동대표의 개회선언으로 총회를 시작하다.
 - 3)이성호 공동대표 인사말을 하다.
 - 4)신용균 공동대표 2007년 결산보고와 사업보고를 하다. 회원들 다른 의견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다.
 - 5)정연탁 감사가 감사보고를 하고, 감사보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다.
 - 6)신용균 공동대표 정관 개정(안) 상정하다. 개정(안) 중 제34조와 제35조 “참여자”를 “후원자”로 수정 후 의결하다.
 - 7)백철우 사무국장의 사회로 새 공동대표, 감사 선출을 위한 임시의장으로 김기오 회원을 선출하다.
 - 8)김기오 임시의장 공동대표 후보 추천을 받다.
 - 9)권문상, 신용균, 이성호 회원 공동대표로 추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공동대표로 선출하다.

- 10) 정연탁, 윤점이 회원 감사로 추천, 참석 회원 만장일치로 감사로
선출하다.
- 11) 권문상 공동대표 인사말씀을 하다.
- 12) 신용균 공동대표 2009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상정하다. 회원들
다른 의견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다.
- 13) 기타 안건으로,
 - .회원, 회비 확충에 노력하자.
 - .실무자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자.
 -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제도 만들자.
 - .여성, 아동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자.
- 14) 신용균 폐회 선언으로 총회를 마치다.



2009년 결산보고



회계연도: 2009년 1월 1일~12월 31일 (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현 금	427,798	차입금(－통장)	6,652,646
적금(퇴직적립금)	5,430,252	퇴직적립금	5,430,252
임차보증금	21,500,000	자 본 금	15,275,152
합 계	27,358,050	합 계	27,358,050

2.2009년 총수입 및 총지출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35,838,351	일반회계 (사무국)	35,604,387	일반회계 (사무국)	233,964
장학사업 특별회계	16,700,964	장학사업 특별회계	16,507,130	장학사업 특별회계	193,834
합 계	52,539,315	합 계	52,111,517	합 계	427,798

3.장학사업 특별회계

수 입		지 출	
후 원 금	16,500,000	장 학 금	16,500,000
이자수익	964	부대비용	7,000
기타수익	200,000	세금과 공과금	130
		현 금	193,834
수입합계	16,700,964	지출합계	16,700,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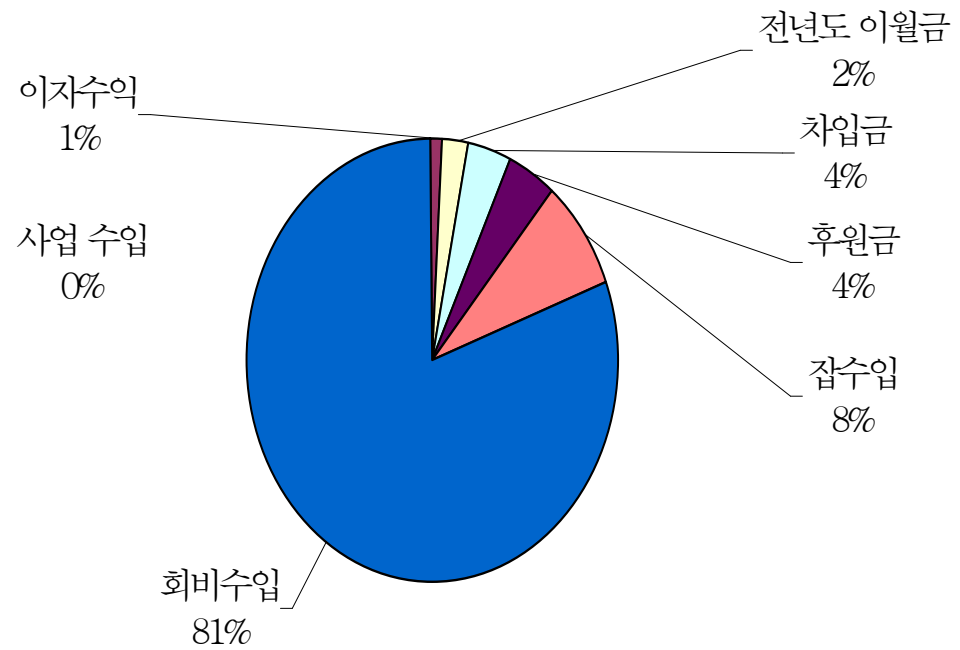
4.일반회계(사무국)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28,910,000	인 건 비	급 여	19,200,000	
	후 원 금	1,560,000		상 여 금	400,000	
기타수입	사업 수입	0		사무유지비	퇴직적립금	1,507,852
	이자수익	408,692			복리후생비	2,427,560
	차 입 금	1,390,788	건물관리비		2,420,000	
	잡 수 입	2,816,500	기기구입비		285,000	
	전년도 이월금	752,371	사무용품비		108,900	
			세금과 공과금		100	
			소모품비		101,650	
			수 선 비		30,000	
			수도광열비		1,285,910	
			통 신 비		579,33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19,000
					발 송 비	212,520
					분 담 금	300,000
					사 업 비	847,300
					회원활동비	1,349,460
					회 의 비	748,740
				출장연수비	40,977	
			사업외비용	잡 비	49,300	
				차입금 상환	3,690,788	
				예 비 비	0	
				현 금	233,964	
수입 합계		35,838,351	지출 합계		35,838,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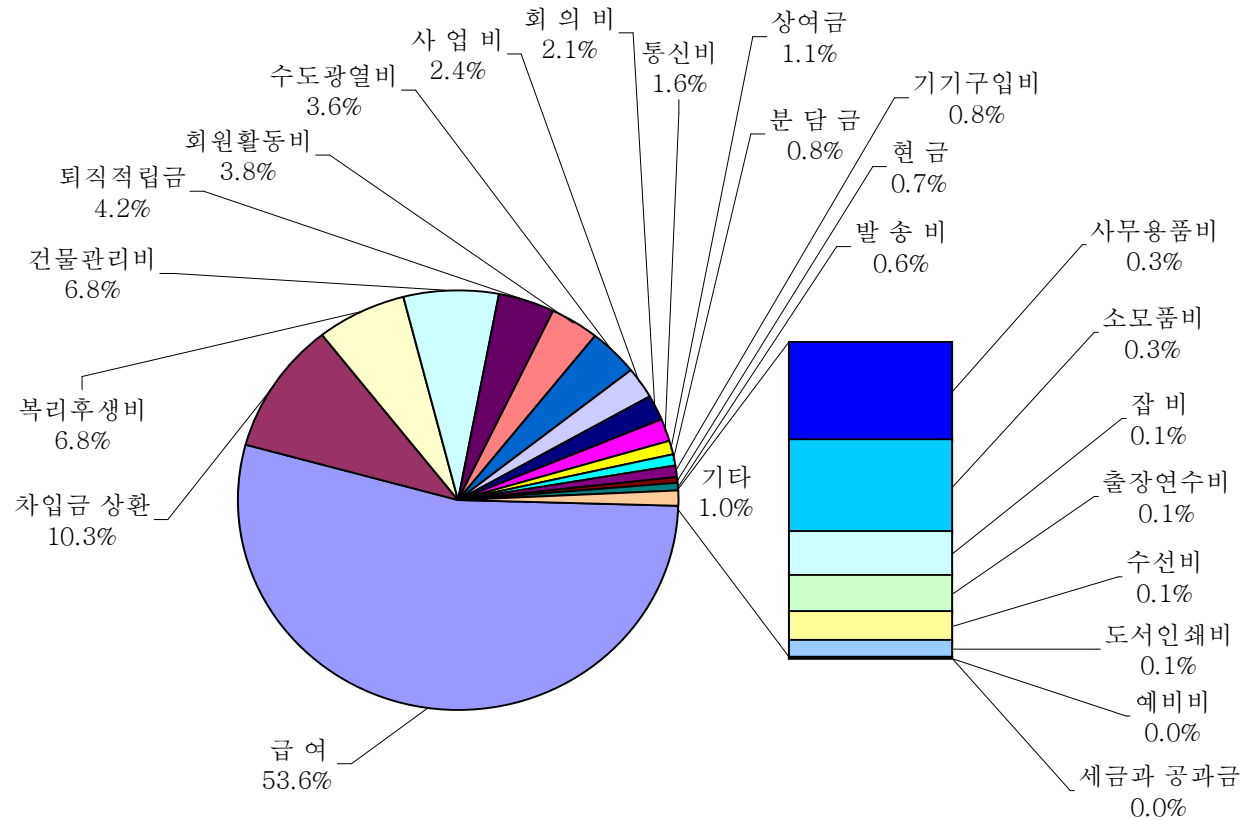
🍊 계정과목 설명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 원 금	정기, 부정기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4대 보험, 사무실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잉크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금

2009년 수입 현황(일반회계)



2009년 지출 현황(일반회계)



 자 산 변 동 현 황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	구 분	2008년	2009년	증감
현 금	752,371 (2.9%)	427,798 (2%)	-324,573	차입금(-통장)	8,411,858 (31%)	6,652,646 (20%)	-1,759,212
적금(퇴직적립금)	3,922,400 (15%)	5,430,252 (20%)	+1,507,852	퇴직적립금	3,922,400 (15%)	5,430,252 (24%)	+1,507,852
임대차보증금	21,500,000 (82.1%)	21,500,000 (78%)	0	자 본 금	13,840,513 (54%)	15,275,152 (56%)	+1,434,639
합 계	26,174,771 (100%)	27,358,050 (100%)	+1,183,279	합 계	26,174,771 (100%)	27,358,050 (100%)	+1,183,279

- 현금: 12월 31일 기준 보유한 현금. 현금에 따라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상환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적금(퇴직적립금): 2009년 12월 퇴직금 적립 통장이 만기가 되어 찾은 원금 4,922,400원과 이자 407,852원 그리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금액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변동 없습니다.

- 차입금(-통장): 2009년 12월 31일 기준, -통장에서 빌려온 금액입니다.
- 퇴직적립금: 왼쪽 설명 참고하세요.
- 자본금: ~~함께하는~~ **개성**의 순수한 자산입니다. -통장에서 빌려온 금액(부채)이 줄고, 퇴직금이 증가하면서 2008년에 비해 1,434,639원 증가했습니다.



2009년 사업보고



참여와 자치를 위한 활동

장학사업

- 성적에 아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무국의 재정과 완전히 분리해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장학사업에만 사용
- 2009년 대학생 2명, 중고생 15명에게 도움을 주었음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2008년 군수 보궐선거에서 **함께하는 거창**이 조례 제정을 제안, 군수가 공약으로 채택. 2008년 12월 12일 거창군에서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12월 29일 조례(안)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거창군에 제출.

- 2009년 2월 11일 사무차장 군청 기획계 방문, **함께하는 거창** 의견에 대한 거창군 검토결과 받아옴.
- 2월 24일 군의회 부의장실. 신주범 부의장, 임종귀 의원과 신승열 정책위원장, 백철우 사무국장, 최성식 사무차장 면담. 기본조례 제정 과정 설명, 함께하는 거창의 (안)과 군의 (안) 차이점 설명. 군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약속.
- 3월 2일 신승열 정책위원장, 최성식 사무차장 군청 기획계 방문. 군에서는 이미 결정 완료, 의회 임시회 개최하면 제출할 것이라고 함. 군의 검토 결과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의 추가 의견을 받기로 한 약속 지키지 않았음.
- 3월 13일 군수면담. 신용균 공동대표, 백철우 사무국장, 윤철 대외협력국장, 최성식 사무차장 참석. 거창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조례(안) 중 ▶회의 자료 및 결과 공개, ▶동일한 주민이 여러 위원회에 오랫동안 중복해서 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가 동의했으나 정책토론회 청구 요건은 다시 검토하기로 함.
- 3월 26일 군청 기획계장과 통화. 조례(안) 중 제7조 “다만, ~”

조항은 삭제하고, 제9조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주민 100명 이상,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이상”으로 조정해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해옴.

- 4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통과. 주민참여 기본 조례 중 제9조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주민 100명 이상,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관련된 정책인 경우 인접 3개 읍·면으로 한다.”로 수정 통과.

- 4월 16일 군의회 본회의 통과.

- 5월 6일 공포.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 거창군이 입법예고 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인허가와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 감면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축소.

- 4월 9일 거창농민회, 푸른산내들과 함께 성명서 발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로 협조 요청.

- 4월 10일 총무위원회에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중 제7조 수수료 감면 요건을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해 감면,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감면”으로 수정 통과.

- 4월 16일 군의회 본회의 통과.

- 5월 6일 공포.

농협중앙회 공과금 오납처리 문제

- 1월 29일 농협중앙회 공과금 납부기에서 납부한 경우 2월 4일자로 처리됨.

- 2월 공과금 지로에 연체료 부과. 300여건.
- 농협중앙회 오류 사실을 알고도 1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음.
- 2월 25일 사무차장 농협에 전화 걸어 문제제기:담당팀장 잘 모른다고 함.
- 2월 25일 밤 농협 담당자 사무차장에게 전화해 사정 설명.
- 3월 2일 사무차장 농협 담당자와 통화. 원칙대로 처리할 것임을 설명
- 3월 3일 농협 담당자, 팀장, 금융지점장 사무실 찾아 옴.
 - 사건 경위 설명, 사과.
 - **함께하는 개항**은 연체료 부과된 주민들에게 3월 중으로 서면으로 사과하고 연체료 전액 농협에서 부담할 것 요구.
 - 금융지점장 서면 사과와 추후라도 확인되면 연체금은 농협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
- 4월 6일 담당 과장, 담당자 사무실 방문. 사과문 전달결과 설명.

한국승강기대학 설립문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신성범 의원이 공약으로 승강기대학 설립을 내세웠고, 같은 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양동인 군수가 승강기대학과 승강기 산업단지 조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대학은 폴리텍대학을 무상으로 증여받고 거창군에서 대학설립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함에도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사립대학으로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재산을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넘겨주고, 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이강두 전 국회의원이 맡아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개인소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승강기대학 설립의 절차와 정당성, 공공재산의 사유화,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하는 개항**은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승강기 대학의 사유화를 막고, 본래 취지대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 2008년 12월 29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설립 허가 신청
- 2008년 12월 29일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설립 허가
- 2008년 승강기 대학 설립이 지역 사회 쟁점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지적
- 2009년 2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거창캠퍼스 재산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서 거창군으로 소유권이전, 연이어 2월 4일 거창군에서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으로 소유권 이전
-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설립 인가 신청
- 5월 6일 ‘승강기산업 마스트플랜 시안 보고 및 공청회’에 신승열 정책위원장, 백철우 사무국장 참석
- 8월 21일 한국승강기대학 설립 인가
- 지적된 문제점들
 - 거창군이 재산을 증여하고, 설립 비용을 부담하고도 법인에 대한 권한(인사권 등)이 전혀 없다.
 - 사립대학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 즉, 이강두씨가 학교의 소유자가 됨.
 - 10년간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10년 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음.
 - 협약서 내용 중 정관에 명시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명시되지 않음.
 - 신입생 모집 방안, 운영비 충당, 졸업생 취업 대책 등이 미흡함.
 - 개인 소유로 되는 것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뚜렷한 방안이 없음(형식상 사유화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자치단체가 사립대학에 재산과 운영비 등을 증여, 출연하는 것도 합법이라는 의견
- 4월 27일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폴리텍대학 무상 증여와 승강기대학 설립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5월11일 자료 도착.
- 승강기안전관리원이 실질적인 학교운영을 책임진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산업밸리와 승강기대학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제공 및 제반 커리큘럼에 대한 Think tank역할만 수행하며,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거창군과 학교 법인에 문의하라고 답변

-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공, 검토 요청→법적 문제 없다.
- 승강기대학과 승강기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정리 필요.

▶ 국제연극제 결산검사위원회

2008년에 시작한 결산검사위원회는 활동보고서를 거창군에 제출하고, 위원회 출범 당시 약속한대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창군이 거절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동안 국제연극제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과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었지만 한 번도 속 시원하게 해명된 적이 없습니다. 군의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국제연극제 문제를 거론했지만 깊이 있는 질문은 찾아보기 힘들고, 문제가 많으면서 예산은 항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결산검사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 5월 18일 결산검사위원회 활동보고서 거창군에 제출. 1달 넘게 군수에게 보고 안함.
- 6월 24일 경 군수에게 보고.
- 7월 20일 결산검사위원회 활동보고서와 관련 서류 정보공개 청구
- 7월 22일 결산검사위원회 군수와 면담
- 7월 30일 군청 담당자, 계장 사무실 방문. 정보공개 청구 철회 요구.→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간이 더 필요하면 기한 연장하라고 조언.
- 8월 6일 문화관광과장, 담당자 사무실 찾아옴. 10월 즈음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할 예정이고, 의회에 보고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1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구.→회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설명.
- 8월 10일 거창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열람’ 결정
- 8월 19일 사무차장 문화관광과 방문, 열람자료 필사
- 8월 21일 군청 담당자 사무실 방문, 나머지 자료 필사
- 거창군에서 토론회(혹은 공청회) 방법에 대해 신승열 정책위원장에게 자문 요청
- 9월 14일 07년 경남도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정보공개 청

- 구, 9월 24일 우편으로 자료 받음.
- 9월 28일 거창군 연극제 관련 자료 의회 제출(의회는 자료만 받고 보고는 받지 않음)
- 거창군 이종일씨 입원을 핑계로 공청회 무기연기 한다고 신승열 정책위원장에게 알려옴.
- 10월 22일 결산검사위원회 활동 보고서와 위원회 해산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10월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결산검사위원회 파행에 대한 **함께하는 거창** 입장 발표

양동인 군수 한나라당 입당에 대한 입장 발표

- 2008년 군수보궐선거 때 양동인 후보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유권자와 약속.
- 3월 23일 양동인 군수 한나라당 입당.
- 4월 1일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한나라당 입당한 것에 대해 거창기독교청년회와 함께 입장 발표

2010년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여

- 8월 27일 거창군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 8월 31일 2008년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임기가 10월 31일까지라 2009년에 구성하는 위원회와 임기 겹치는 것에 대해 군청에 문제 제기
- 9월 4일 담당계장에게서 전화 옴. 임기가 겹치는 것은 사실이나 전국적인 현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그대로 진행하라고 결정.
- 9월 7일 이점도 회원 위원으로 위촉
- 9월 30일 첫 회의, 설문조사 실시기로 함.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설문조사 후 결정하기로 함. 설문 문항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함.
- 10월 12일 2차 회의. 설문결과에 대한 토론. 주민들은 의정비 인상에 반대.
- 10월 27일 3차 회의. 3,200만원으로 결정(19.66% 인상). 10명의 위원 중 9명이 19.66% 인상에 찬성, 이점도 회원만 5% 인상

주장.

- 설문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의정비 금액이 경남의 몇 위라는 이유로 의정비 인상.
- 의정비 결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 또는 주민 의견 조사와 반영에 대한 원칙을 마련할 필요 있음.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 8월 20일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개정(안)에 대해 ▶민간위원 추천, ▶부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의견 제출.
- 10월 5일 제출된 의견이 조례에 반영되었다고 회신 받음.

 2010년 거창군 업무보고 참석

- 사무차장 9월 21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참석

 88고속도 대책위

- 거창군 남상면~가조면 구간(제10공구) 확장 노선이 기존 노선을 따라 확장하기로 결정.
- 기존 노선을 따라 확장하는 (안)은 당초 제시된 4개의 (안) 중에서 안전성이 가장 떨어지는 반면, 공사비가 가장 저렴한 노선.
- 88고속도로 확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안전성 문제인데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노선을 선택한 것은 문제.
- 시속 100Km 주행에 필요한 회전곡선반경은 맞출 수 있겠으나 실제 주행 속도가 100Km이상인 점을 감안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필요.
- (주)한양이 시공업체로 선정
- 4월 2일 작은권리찾기 모임에서 의논, 공식적 문제제기하기로 함.
- 88고속도로 대책위는 정확한 근거 자료 확보 후 대책위 전체 회의를 열어 공식 대응한다는 입장임.
- 4월 3일 공사방식 결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4월 8일 관련 자료 일부 받음. 거창구간만 턴키방식으로 결정, 입찰관련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 제기 후 5월 7일 담당자와 통화. 업체 선정 심사 결과와 도면 등 추가 공개 요구
- 5월 6일 사무차장 고속도로 확장공사 주민 설명회 참석.
 - 도로공사와 신성범 국회의원 홍보하는 수준의 주민설명회
 - 확장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음.
- 5월 11일 이점도 운영위원, 최성식 사무차장 88고속도로 건설사업단(고령) 방문, 도면 열람.
 -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심소정 구간의 회전곡선반경을 700m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함
 - 양향천교 기준으로 기존 도로보다 최고 약 9m정도 올라감.
 - 인터체인지로 인해 한들 우량 농지 잠식 예상보다 많음
- 설계 완료 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응하기로 함

고견사 임도개설 문제

- .고견사와 신도회에서 절을 위한 임도 개설을 경남도지사에게 요구, 경남도에서 예산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지역 사회 논란
- .거창 전체 주민들뿐만 아니라 가조면의 주민들까지도 임도개설로 인한 환경 파괴에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3월 25일 윤철 대외협력국장, 신승열 정책위원장, 백철우사무국장 과 산내들 간사 행복한 절 방문, 자문 구함.
- .3월 30일 고견사 주지스님 푸른산내들 사무실 방문.
 - 윤철 대외협력국장, 최성식 사무차장 그리고 푸른산내들에서 최정에 사무국장, 유영재 정책국장, 황재숙 간사 참석
 - 고견사 주지 스님은 임도 개설을 원하지만 임도 개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소방안전 시설, 모노레일 복선화 등)이 마련되면 동의할 의사 있음을 밝힘.
- .4월 2일 12시 동래갈비. 산림환경과 직원과들과 만나서 고견사 측의 주장을 전달. 거창군은 시행 여부, 예산 등을 검토하기로 함.

군수 · 군의원 정당공천 폐지운동

- .5월 8일 실무자 회의(김홍섭, 최성식, 윤동영, 황재숙)
- .5월 14일 오전 10:30 거창본부 발족 기자회견(군청 브리핑룸)
오전 11:30 군의회 의장단 방문(공천 폐지서명 요구 등)
- .노 前대통령 서거로 일정 차질
- .5월 30일 신성범 의원 면담(권문상 대표, 최성식 사무차장, YMCA이사장, 부이사장, 김홍섭, 김태섭)
 - 정당 공천에 찬성한다는 입장
 - 정당공천으로 비롯되는 문제점을 선거과정뿐만 아니라 기초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설명,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겠다고 밝힘.
 -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 .6월 11일 농협 군지부 앞에서 길거리 서명운동
- .6월 16일 정리, 결산. 단체 분담금 100,000원
- .참여단체: **함께하는 거창**, YMCA, 푸른산내들, JC, 전교조 거창지회, 거창군 여성농민회, 거창군 농민회, 거창신문, 서경신문

 독립영화 ‘워낭소리’ 상영

- 2월 26일 7시 30분 문화센터.
- 관람객 많아 일부는 돌아가고, 9시에 추가 상영한다는 소문으로 다시 찾아온 주민들도 있음.
- 대규모 무료 영화 상영에 대한 관점 정립 필요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 사업

- 5월 23일 노무현 전(前) 대통령 서거.
- 5월 23일 저녁 아림골 식육식당에서 모임.(이한철, 이상재, 유영재, 윤철, 최광재, 정연탁, 최성식, 송만호, 신승열 등)
 - 단체별 참가가 아닌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분향소 설치하기로 의견 모음.
- 5월 24일 오전 로터리에 분향소 설치, 오후 2시 30분경부터 조문 시작, 출상(29일)까지 분향소 24시간 운영하기로 결정.
- 분향소 야간 당번 단체 24일(일):푸른산내들, 25일(월)함께하는 거창, 26일(화)YMCA, 27일(수)전교조, 28일(목)농민회
- 26일 아침신문 간지로 분향소 운영 안내문 배포
- 29일 저녁 8시~, 추모문화제 개최, 200여명 참석
- 주민들의 자발적 조문과 성금, 성품
- 유치원생에서부터 노인들까지 각계각층 조문, 인근 함양 등에서 조문오기도 함.
- 추모기간동안 약 5,500여명 조문(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주요 기관장 조문)
- 총지출 4,700,720원. 주민들의 자발적 모금 2,430,720원, 나머지 부족분은 거창군에 보조금 신청.
- 6월 12일 거창군에 보조금 신청
- 6월 16일 보조금 교부 받음
- 7월 3일 정산서 제출
- 7월 11일 봉화마을 방문

 6·10 민주항쟁 기념대회

-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기념대회 가짐.
- 함께하는 개항**은 시국선언에만 참여.

 故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

- 8월 19일 **함께하는 개항** 사무실에서 실무자 회의
- 8월 21일 대표자회의, 동래갈비. 국장이므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추모문화제만 준비하기로 결정.
- 8월 23일 군청 앞 로터리에서 추모 문화제 개최, 90여명 참석

 공무원노조 징계 반대 운동

- 8월 21일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부당 징계에 대해 거창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성명 발표

 북상초등학교 문제

교장 공모와 관련 절차의 정당성과 자격 시비에 이어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 8월 31일부터 마을학교 시작, 40명 중 15명 정도 학교로, 나머지는 마을학교로 등교. 마을학교는 1달 정도 운영 예상
- 9월 2일 동래갈비에서 이성호 공동대표, 윤철 대외협력국장, 이상재 지역공동체 위원장, 최성식과 서원 북상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면담.
 - 당장 지역 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은 없지만 앞으로 같이 해야 할 것 같다
 - 지역 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지 고민 필요
- 9월 25일 북상 남해횃집에서 상임위원회 개최, 학부모들과 대화
- 9월 26일 학부모 회의에 사무차장 참석;협상 전략, 창구, 파트너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태
- 9월 27일 북상면 사무소에서 교육장(교육장과 과장 3인, 북상초등교장, 변현성씨 중재자로 참석)과 학부모 대화. 사무차장 참석;교육장은 마을학교를 접고 등교하는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지 못함

- 학부모들은 아무런 대안이나 약속도 없이 등교할 수 없다고 주장
- 10월 14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 북상 방문, 학부모들과 간담회.
 - 학부모들 안민석 의원 중재안 받아들임.
- 10월 6일 경상남도 교육청 국정감사장에서 중재안 확인
 - 2011년 교장 공모제 추진, 도교육감 북상초등학교 방문해서 문제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 기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약속 등
- 10월 22일 마을학교 관련 학부모와 학생들 금원산에서 정리 캠프
- 12월 16일 권정호 도교육감 북상초등학교 방문, 국정감사장에서의 약속 확인

행정구역개편 민간위원회

-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꾸려지는 위원회
- 선거법 위반 등의 요소가 있어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되 군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
- 9월3일 5시, 군청에서 첫 회의
- 이명박의 815 연설 후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에 통폐합해서 2010년 지방선거에 통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출하는 시나리오 작성, 각 지자체 전달.
- 시간상 어려워 보이며, 통폐합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 형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거창은 부정적인 의견 다수.

거창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

- 12월 28일 동래갈비
- 농민회, YMCA,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민중연대 대표자와 실무자 모임.
- 2009년 마무리, 2010년 지방선거 등에 대한 의견 교환

기 타 활 동

KBS 신년음악회

- .1월 14일 회원 20명 음악회 참가
- .1월 13일 이성호 공동대표 티켓 제공으로 회원들에게 선착순 배포

운영위원회 Workshop

- .2월 6일. 사무실.

1.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

- 함께하는 거창의 사업 2/3 정도가 집행부 쪽으로 집중
- 의회, 한계 있지만 주민의 대표성 인정해 나가야
-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비중을 높혀 나가야
-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라,
여러 지역 여러 단체에 정책 제안 및 문의 필요성

2. 주민참여 부분

- 조례 부분 : 주민참여기본조례, 주민참여예산조례 촉구
- 의회 부분 : 인터넷 중계의 필요성
조례 입법예고 전 사전 접촉 필요
-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이장, 주민자치위):
어떻게 추동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필요

3. 학교급식 지원센터

- 급식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세우고 내용을 채워나가야
- 제도보다 내용의 중심을 잡아나갈 사람이 중요
- 급식센터에 대한 주민의 공감 필요 : 설명회...
- 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실무소위원회 재정비 필요
: 군과 교육청 실무자의 인사이동

4. 연대 활동

-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가는 연대 : 상근자대상 교육프로그램...

- 연대를 통해 무엇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
- 함께하는 거창의 기획 및 홍보부분의 체계화:소식지, 홈페이지, 지역신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

- 2월 17일 최성식 사무차장 참석.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현지 실사 거창 방문
- 거창군 살고 싶은 도시로 선정
- 7월 6일 1차 회의 참석

거창군 계획위원회 참석

- 3월 10일 김기오 회원 참석
- 4월 29일, 6월 26일
- 8월 27일 김기오 회원
- 9월 16일 임기 만료에 따라 김기오 회원 거창군 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경로당 소비자 교육

- 3월 25일 남상면 사무소, 12월 28일 가조면 동례리 경로당, 12월 29일 거창읍 죽전 경로당. 최성식 사무차장 강사로 참가

지역혁신협의회

- 4월 8일 이상재 지역공동체위원장 참석

생태공원 용역보고회 참석

- 5월 6일 최성식 사무차장 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보고회 참석

영화상영(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

- 5월 22일 저녁 8시 종합사회복지관 소회의실
- 30여명 참석
- 작은권리찾기 모임에서 주관

 전교조 20주년 기념식

- 7월 10일 문화센터 야외 공연장. 최성식 사무차장 참석

 거창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

- 8월 28일 최성식 사무차장 참석

 인터넷 누리집 개편

- 8월~9월 성정현, 이종성 회원의 도움으로 인터넷 누리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도 단수 사태

- 9월 25일~27일까지 거창읍 전역 단수 사태 발생
- 당초 거창군은 25일 밤부터 26일 아침까지 상수관 교체를 이해 단수한다고 했으나 시공상의 문제로 단수 시간이 길어짐.
- 단수도 문제였으나 장시간 단수에 대처하는 거창군의 능력에 많은 문제점 노출
- 9월 28일 YMCA와 공동으로 입장 발표, 관련 내용 정보공개 청구(1.시공업체 선정 기준, 2.시공 업체의 적정성 판단 결과, 3.계약 방식, 4.계약서 및 부속서류(하자 보수, 피해 보상들의 규정 등 상세한 내용 포함))
- 9월 28일 수도사업소장 직위해제, 건설과장 겸직 발령
- 시공업체의 시공 능력 등이 도마에 오름. 거창군 상하수도 공사 지정업체가 1개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덕유산 국립공원 구역조정 협의회 참석

- 10월 9일 이성호 공동대표 참석

 거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 참석

- 11월 18일 최성식 사무차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 10월 6일 이점도 회원 거창군 자연경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

천

- .10월 9일 수송대 구연교 재가설 문제 심의
- .11월 23일 수송대 구연교 외 2건 심의
- .12월 10일 수송대(주차장 등) 리모델링 설명회 참석

 경상남도 종합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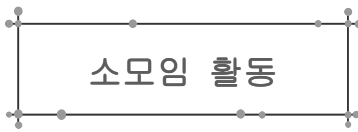
- .11월 9일 거창군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 감사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 의견 전달

 회원 송년 모임

-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오후 7시 30분~
- .사 회: 신승열 회원
- .장 소: 콘스트하우스 인
- .회원과 회원가족 65명 참가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 .12월 14일 백성만 회원 위원으로 추천.



작은권리찾기 모임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딪치는 작은 권익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현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더불어 누리는 권리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참여의 기쁨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슴 뿌듯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김기오, 총무:김도연)

신년 가족모임

- 1월 6일 흑송.
- 참가: 김기오, 박창구, 최광재, 이점도, 김도연, 장병욱, 최성식, 신용민
- 2009 사업 구상하기

2월 27일, 동래갈비

- 참가: 김기오, 박창구, 이점도, 김도연, 장병욱, 최성식
- 청소년 쉼터 도면 검토, 참석자들이 약속이 겹쳐 진지한 토론은 되지 않음.

4월 2일, 만포돼지국밥

- 참가: 김기오, 박창구, 이점도, 김도연, 장병욱, 최광재, 변범식, 신용민
-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 문제 관심 가지고 예의주시하자.

4월 24일, 돌방식당

- 참가: 김기오, 박창구, 이점도, 김도연, 장병욱, 최광재, 신용민, 최성식, 장병덕

-영화상영 작은권리찾기모임에서 추진

 5월 18일, 동래갈비

- 참가:김기오, 박창구, 이점도, 김도연, 장병욱, 최광재, 신용민, 최성식, 장병덕
- 5월 22일 영화상영 준비

 6월 29일, 동래갈비

- 참가:김기오, 박창구, 이점도, 김도연, 장병욱, 최광재, 최성식, 유영재
- 청소년 쉼터 공사 시작에 따른 점검(7.6~10), 교촌 앞 인도 개설 문제제기, 거열산 등산로 훼손을 막기 위한 대체 등산로 제안 사업 추진(푸른산내들과 함께), 남상초등학교 앞 등 인도 보행권 침해 사례 조사

 7월 27일, 건계정 식당

- 등산로 모니터링 8월29일, 9월5일, 9월 12일 실시하기로 함.

 등산로 모니터링

- 8월 22일, 금귀봉 등산로 모니터링(김기오, 최광재, 송만호, 최성식)
- 8월 29일, 정수장 뒷산(김기오, 송만호, 변범식, 최성식)
- 9월 5일 망실봉(김기오, 박창구, 최성식, 송만호)
- 9월 2일 산림환경과 푸른거창 담당 방문(사무차장), 죽전공원 설계에 대해 설명 듣고 옴, 군에서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우리 의견 정리 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함.

 진주수목원 방문

- 9월 28일 김기오, 최성식. 청소년 쉼터 수목 식재에 관한 자문 구함.

▶ 9월 30일 박창구 회원 농장-가족들과 함께

- 참가:김기오, 박창구, 김도연, 최광재, 신용민, 이점도, 최성식.
- 청소년 쉼터와 보행로 문제 정리해서 공개 먼저 제안하기로 함.
- 등산로 문제는 계속 검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기로 함.

▶ 10월 26일 동래갈비

- 참가:김기오, 최광재, 이점도, 장병욱, 김도연, 장병덕, 변범식, 신용민, 최성식, 송만호
- 청소년 쉼터 화장실 관련 문화재 심의위원 만나서 의견 나누기로 함.

▶ 11월 28일 통뼈

- 참가:김기오, 최광재, 박창구, 이점도, 장병욱, 김도연, 변범식, 최성식
- 문화재 위원과 만나지 못했음.
- 등산로 문제는 망실봉 대체 코스 등을 계속 알아보면서 산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들어보자

푸른 숲

매달 두 번씩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참가 안내(회장:이기식 산행대장 겸 총무:백철우)

제83회 계룡산(신년산행)

- 1.날짜:2009년 1월 11일
- 2.참가자:김한수, 윤철, 이성열, 이기식, 백철우, 김학균, 김향란, 이모정, 이한술,이한결 이상 10명
- 3.코스:동화사→관음봉→삼불봉→동화사
- 4.산행시간:4시간30분

제84회 삼신봉

- 1.날짜:2009년 2월 1일
- 2.참가자:김한수, 이기식, 백철우 이상 3명
- 3.코스:청학동→삼신봉→상불재→삼성궁(청학동)
- 4.산행시간:4시간 30분

제85회 기백산

- 1.날짜:2009년 2월 15일
- 2.참가자:김한수, 신승열, 이성열, 노용관, 최성식, 이한결, 최용준 이상 7명
- 3.코스:고학→기백산→용추사
- 4.산행시간:5시간

제86회 바래봉

- 1.날짜:2009년 3월 1일
- 2.참가자:김영수, 김한수, 이기식 이상 3명

3.코스:운봉→바래봉→정령치

4.산행시간:5시간 30분

 제87회 금원산~현성산

1.날짜:2009년 3월 15일

2.참가자:김영수, 김한수, 윤철, 이기식, 방창희, 김용수, 백철우 이상 7명

3.코스:휴양림→금원산→현성산→휴양림

4.산행시간:5시간

 제88회 무학산

1.날짜:2009년 4월 5일

2.참가자:김영수, 김한수, 윤철, 이기식, 이성열, 김학균, 하동근, 백철우 이상 8명

3.코스:서원곡 주차장→무학산 정산→서원곡 주차장

4.산행시간:2시간

 제89회 단지봉

1.날짜:2009년 4월 19일

2.참가자:김영수, 신승렬, 백철우 이상 3명

3.코스:고비마을→드릅밭(단지봉 중턱)→고비마을

4.산행시간:2시간

 제90회 덕유산

1.날짜:2009년 5월 10일

2.참가자:김영수, 김한수, 이기식, 백철우 이상 4명

3.코스:송계사→지봉안→황경재→송계사

4.산행시간:4시간

 제91회 설악산

- 1.날짜:2009년 6월 5일~7일
- 2.참가자:김영수, 신용균, 김한수, 윤철, 이기식, 권문상, 김학균, 백철우 이상 8명
- 3.코스:오색약수→대청봉→회운각→천불동계곡→설악동
- 4.산행시간:10시간

 제92회 덕유산(동엽령)

- 1.날짜:2009년 7월 5일
- 2.참가자:김영수, 이기식 이상 2명
- 3.코스:안성(무주)→동엽령→안성
- 4.산행시간:3시간 30분

 제93회 동엽령

- 1.날짜:2009년 7월 19일
- 2.참가자:김영수, 이영일, 백철우 이상 3명
- 3.코스:안성(무주)→동엽령→안성
- 4.산행시간:3시간 30분

 제94회 기백산

- 1.날짜:2009년 8월 2일
- 2.참가자:김영수, 백철우 이상 2명
- 3.코스:상촌마을(고학리)→기백산→상촌마을
- 4.산행시간:3시간

 제95회 설악산(공룡능선)

- 1.날짜:2009년 8월 14일~16일(2박3일)
- 2.참가자:김영수, 윤철, 송철주, 이기식, 백철우, 최성식, 최용준 이상 7명
- 3.코스:소공원→비선대→금강굴→마등령→나한봉→1275봉→회운각→천불동계곡→비선대→소공원
- 4.산행시간:13시간

 제96회 지리산(삼신봉~세석)

- 1.날짜:2009년 9월 6일
- 2.참가자:김영수, 신용균, 이경배, 윤철, 이창희, 신승열, 최성식, 백철우 이상 8명
- 3.코스:청학동→삼신봉→세석→거림
- 4.산행시간:8시간

 제97회 황석산

- 1.날짜:2009년 9월 20일
- 2.참가자:김영수, 신용균, 이경배, 윤철 이상4명
- 3.코스:탁현마을→황석산→탁현마을
- 4.산행시간:4시간

 제98회 구봉산

- 1.날짜:2009년 10월 11일
- 2.참가자:김영수, 윤철, 신승열, 노용관 이상 4명
- 3.코스:구봉산 주차장→구봉산→주차장
- 4.산행시간:3시간

 제99회 지리산 피아골

- 1.날짜:2009년 11월 1일
- 2.참가자:김영수, 신용균, 이경배, 윤철, 권문상, 송민선, 권영인, 이기식, 이영자, 노용관, 정성아, 노민서, 이영일, 이상재, 이성구, 이승환, 백철우, 서대림, 김학균, 윤미라, 김성식, 김효식, 서무현, 최성식, 최용준, 하동근 이상 26명
- 3.코스:연곡사→피아골 산장→연곡사
- 4.산행시간:5시간

 제100회 기백산

- 1.날짜:2009년 11월 15일
- 2.참가자:김영수, 이기식, 백철우 이상 3명

3.코스:고학리→기백산→고학리

4.산행시간:3시간

 송년모임

1.날짜:2009년 12월 19일

2.임원 선출 회장:이기식, 산행대장 겸 총무:백철우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0년 활동 계획

2010년을 준비하며

2010년은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가 출발한 지 10년, **함께하는 거창**으로 새롭게 출발한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나름대로 많은 경험과 보람된 성과도 얻었습니다.

우선 **함께하는 거창**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회원으로, 후원자로, 평범한 주민으로 **함께하는 거창**과 인연을 맺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안정되고 성숙해진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회의체계를 한층 더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합니다. 몇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하는 거창**이 출발할 때의 첫 마음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형식과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방도를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 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군수, 군의원, 도 교육감, 도지사 등 투표용지만 8장이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신 바짝 차려할 선거입니다. 지난 군수 보궐선거에서 경험했듯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 거창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후보들이 선거 기획사를 통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의 의견, 거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공약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 기간에만 요란하고 선거가 끝나면 메아리처럼 사라지는 공약이

아니라, 당선자가 임기동안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는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 느낄 수 있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항상 선거기간처럼 주민들은 대접 받아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고, 정치인들은 선거 기간처럼 겸손한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6월 2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앞으로 4년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참여하는 활동방향을 잡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울러 거창의 건강한 힘들을 모으고 나누는 연대와 협력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적은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일도 많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그렇고 88고속도로 문제가 그랬습니다.

2010년은 새로운 풀뿌리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2010년 예산(안)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30,000,000	인 건 비	급 여	19,200,000
	후 원 금	1,900,000		상 여 금	600,000
기타수입	사업 수입	0		퇴직적립금	1,200,000
	이자수익	1,000		복리후생비	2,500,000
	차 입 금	2,000,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2,400,000
	잡 수 입	2,500,000		기기구입비	500,000
	전년도 이월금	223,964		사무용품비	100,000
				세금과 공과금	5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100,000
				수도광열비	1,500,000
				통 신 비	70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800,000
				발 송 비	500,000
				분 담 금	500,000
				사 업 비	2,000,000
				회원활동비	1,000,000
				회 의 비	800,000
				출장연수비	50,000
			사업외비용	잡 비	50,000
				차입금 상환	2,000,000
				예 비 비	24,464
수입합계		36,624,964	지출합계		36,624,964

※ 장학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후원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는 원칙과 후원금의 액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 록



보도자료	양동인 군수는 유권자의 뜻을 짓밟지 마라!	
보도협조일 2009. 4. 1(월)	연락처 거창YMCA 하동근간사(942-6986, 010-9545-5277)	
총 매 수 3쪽	함께하는 거창 최성식 사무차장(942-1117, 017-596-2397)	

<양동인 거창군수 한나라당 입당에 대한 입장>

양동인 군수는 유권자의 뜻을 짓밟지 마라!

자신들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김태호, 강석진 두 명의 군수가 연이어 중도 사퇴하고 보궐선거를 치루면서 거창의 지방자치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두 군수 모두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되었으나,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의 뜻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쫓아왔다. 누구보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거창 주민들은 지난해 군수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대 의지를 투표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

양동인 거창군수와 김기범 전 거창군수 후보, 임종귀 군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세 사람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특히, 양동인 군수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당선 후 ‘한나라당에 입당하지 않겠다’ 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양 군수는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고 스스로 한나라당에 걸어들어 갔다. 정치인들의 거짓말과 행동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이를 발판으로 출세하고

자 하는 욕심을 앞세워 스스로 주민들과 한 약속을 헌신짝 내치듯 하는 일이 과연 공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와의 약속을 뺑개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치적 출세를 위해 군수직을 뺑개친 두 전직 군수와 정당공천제 반대와 입당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양동인 군수가 스스로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모두 유권자를 볼모로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천박한 처세술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지역정치인 줄 세우기를 당장 중단하라!

지금 한나라당에 입당한 지역 정치인은 대부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을 서둘러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시키는 것은 권력 독점을 통해 사실상 지역에서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 아닌가? 덧붙여 한나라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 된 것은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적 거래를 통해 유권자의 뜻을 무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지역 정치인을 줄 세우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권력 독점의 달콤함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한 독화살이 될 수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아울러 진정 정책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오만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중앙 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난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일 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우리 거창에서는 중앙정치의 간섭과 지역 정치인의 경솔한 정치적 판단이 지방자치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는지 뼈저린 경험을 했다.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토착 철새 정치인’ 들은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책임 있는 정치적

판단을 촉구한다.

1. 유권자의 뜻과 약속을 저버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양동인 군수와 ‘토착 철새 정치인’ 들은 거창군민에게 사과하라!
2. 양동인 군수와 ‘토착 철새 정치인’ 들은 한나라당 입당을 철회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에 앞장서라!
3.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2009년 4월 1일

거창YMCA, 함께하는 거창

<참고자료>

2008년 6월 거창군수 보궐선거 당시 양동인 후보가 **함께하는 거창**의 질문에 보낸 온 답변서

08 05 29 09:07a Windows XP
055-943-6355
p.1

13. 양동인 군수 후보자 의견서

내 용	찬성	반대	이 유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X	○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		
·학교 급식시행비디 전납	○		
·면지역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		
·청소년 쉼터 설치	○		
·지역 특성 신진 문화예술 행사 내실화 (축제 등 포함)	○		

※기타 하고 싶은 말(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2008-05-30 FRI 08:59AM ID:
PAGE: 1

및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거창군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밝히건대 상위 법령의 취지를 왜곡하여 사회정의를 거꾸로 세우는 행위다. 또한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활동에 지나친 제약을 지우는 개악이다.

사회정의에 어긋나고 공공성 제한

거창군이 내세우는 상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따위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제139조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면서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이 법의 취지는 특정인을 위한 것일 때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것이지 공공성을 지닌 일에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거창군은 공공성을 지닌 정보공개 요청에 수수료를 물리려하고 있다. 명백한 법 취지 위반이다.

또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정할 사항이다. 실제 경남도나 광주시들에서는 이번 거창군의 개정안과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광주시의 각 기초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인근의 함양군, 산청군은 거창군의 기존 조례에 가깝다.

정보공개법 제17조에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정보공개법 시행령 17조는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다. 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의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의 취지는 공공목적의 경우 비용 부담을 덜어주라는 뜻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령에 굳이 맞출 필요 없고 오히려 행안부령 보다 더 낮

은 수준의 비용을 정하라는 뜻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32조는 장애인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수수료조례와는 아무 상관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따위의 정책을 강구하라고 되어 있다.

이 법의 취지는 조문 그대로 장애인의 경제 부담을 줄이라는 뜻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게 기술, 행정,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사회 약자를 배려한 사회 정의이기 때문이다.

개정안 독소 조항 폐지하고 약자와 공익 앞세워야
약자를 배려하고 공익을 앞세우는 것이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이다. 사회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약자와 공익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쏟아야한다. 그러나 거창군의 이번 개정안은 사회약자에게 없던 부담을 새로 지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안기는 것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는 더욱 발전시켜야지 앞섰다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는 훌륭한 조례를 뒤쳐진 다른 단체에 맞추어서는 결코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에 바란다.

- 거창군은 개약 조례의 상정을 즉각 취소하기 바란다.
- 거창군의회는 상정된 개약 조례를 수정, 개선시켜주길 바란다.

2009. 4. 9

거창군농민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 거창**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141조 (경비의 지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

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경남도 수수료 징수조례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3. 다자녀 가정인 경남i 다누리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 3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 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경남i 다누리 카드 소지자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등 감면제외, 정보공개 수수료 50% 감면

경남 함양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공익이나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제공 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광주민주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8.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경남 합천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관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집행기관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광주시 복구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수수료
- ※ 국가유공자 등 감면제외, 예비군 대장 통장 감면 대상

광주시 남구

제7조(비용부담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 따로 정하지 않음 이밖에 광주시 광산구, 전남 나주시, 전북 무주 등 공익목적 정보공개 수수료 전액 감면

이명박 정부는 억압, 독선, 반서민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큰 충격과 비통함은 이제 왜? 그리고 누가? 전직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백만 조문행렬과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장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추모 분위기는 분명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 독선과 독주, 민생고통 외면,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역사의 진보와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지난 수십년간 국민의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한꺼번에 파괴되고 있다. 민주사회의 기본 권리인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당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기자회견까지 집회로 몰아 소환장을 남발하는 상식이하의 행태들이 남발되고 있다. 미디어 악법을 만들어 언론을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시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 권력기관인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직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아가는 국가 폭력기구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고도 이들은 반성을 모른다. 살아있는 권력과 재벌에는 한없이 나약하고, 죽은 권력과 사회적 약자인 서민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서민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서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부자에겐 100조원의 감세혜택을 주고 4대강 죽이기엔 18조의 예산을 쏟아 부어 극소수 특권층과 재벌건설사의 배만 불리려한다. 그 사이 우리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국가권력의 원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국민이 정부에게 권력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미이며, 국민과 일상적인 소통으로 국민의 뜻에 따른 정책을 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과 소통을 거부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정권은 이미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적 지지를 기초로 정부를 운영하려는 기본 원리를 포기하고 국가공권력에 의존해 권력을 지탱하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게나 국민에게 모두 불행할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진정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기초를 바꾸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권력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보복적 수사로 전직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MB식 독주가 아닌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의 근본적인 쇄신을 촉구한다.
2. 검경을 앞세운 강압적 통치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위를 중단하라. 특히 미디어 악법, 집시법 개악 등 반민주 악법과 비정규직법, 최저임금제법 등 반 민생 악법의 개악을 즉시 중단하라.
3.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북핵위기 국면 조성으로 넘기려는 유혹을 버리고, 남북간 대화를 통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간의 어떠한 교전도 반대하며 정부의 일차적 책무는 남북간의 대화를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15, 10.4선언을 이행하고 남북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4. 기득권층과 부자위주의 정책을 중단하고 서민살리기 정책 수행을 요구한다. 부자감세 100조 및 4대강 죽이기는 극소수 특권층 재벌권 설사를 위한 특혜정책을 중단하고, 교육, 보육, 실업, 일자리 대책중심의 서민회생 대책 예산의 우선확보를 요구한다.

우리는 6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창군민들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과 억압성을 통제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작은 차이를 넘어 연대하고 협력하여 나갈 것이다. 지금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먼저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10일

거창군 제시민사회단체

(함께하는거창/푸른산내들/거창YMCA/희봉위생노조/공무원노조/사회보험노조/적십자병원노조/전교조/민예총/농민회/여성농민회/민주노동당거창군위원회)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 거창군이 입법예고한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안의 경우 제8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에 산림의 개념에 계곡을 새로 넣는 등 경관 보전의 범위를 넓혔고,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 시켜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뜻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 심의 위원회와 관련한 제13조 ④와 ⑤의 경우,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취지를 살려야 하겠습니까.

즉 민간위원의 대표성과 위상을 보다 명확하고 높게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개정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인 군민의 관심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 안: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④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

⑤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연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위촉하며, 산림환경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009년 8월 20일

참여와 자치의 지역 공동체



www.gcnpo.org

함 께 하 는 거 창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민생에 전념하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와 민주회복 민생 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민주당 집회신고)에 참석한 공무원 1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국선언 지지 신문광고(7.13~7.27기간중 경향신문), 성명, 현수막 게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105명(형사고발대상자 포함)을 국가(지방) 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 및 성실·복종·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중징계를 요청했다.

『정권의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선언은 폭력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고통 받는 국민에게 교사·공무원들의 양심선언은 민주주의 회복의 희망이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국민의 공무원으로써 양심과 정의에 의거한 공무원들의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집단행위라 볼 수 없으며, 성실·복종 의무는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집단행동 금지위반, 복종의무 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무리한 고발, 중징계 조치를 강행하려는 것은 명백한 징계권의 남용이다.

우리는 권력의 탄압에 맞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실천하는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방침과 고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직 1% 부자만을 위한 정책과 대다수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면서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행위들이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례 없는 2명의 전직대통령을 보내면서 슬픔과 분노가 뒤범벅이 된 눈물로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 쓰러지는 사람, 절벽위에 선 사람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광경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자신이 없다. 적어도 이 정부가 선진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딘 정부라면 반대하는 사람도 저항하는 사람도 선진한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내 편만 데리고 만들겠다는 선진한국은 한 낫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충수 일 뿐이다.

만약 이 정부가 부당한 징계방침과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이어간다면 공무원노동자들이 『참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앞에 한 걸음 다가서고자하는 거대한 물결을 막아서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무원!』 이것이 바로 우리국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시대정신이며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다. 이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탄압은 새로운 저항을 만들 뿐이며 국민에게 외면받는 지름길이다.

또한 경남도지사와 거창군수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징계지시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수호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정의롭게 활동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위민행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정부가 정말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9년 8월 21일

공무원노조탄압 저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거창군지역 연대단체 일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희봉위생공사 노동조합, 민주노동당거창군위원회, 민예총 거창지부, 적십자사거창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거창지부, 푸른산내들, 거창YMCA, **함께하는 거창**)

보도 자료 메아리만 되어 돌아온 민원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보도협조일 2009. 9. 28(월) 총 매 수 2쪽	연락처 함께하는 경찰 최성식(942-1117, 017-596-239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08

〈상수도 단수사태 관련 시민단체 성명〉

메아리만 되어 돌아온 민원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거창 주민들은 지난 주말, 느닷없는 물과의 전쟁을 치른 뒤 이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빈 수도꼭지를 보며 군청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중이거나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왜 물이 안 나오는 것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쯤 물이 나오는지 알려주어야 할 텐데,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심드렁하게 대답하다 심지어 통명스레 소방차를 보내주겠다고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무슨 행정이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화를 냈니까! 2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8시간 단수하겠다고 공고했던 거창군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단수시간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올려서 알아들을 수조차 없는 방송 한두 차례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나 몰라라 입니다. 3시간 뒤에 나온다면 물이 6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고, 즐거운 주말계획을 짜던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물과의 전쟁으로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식당을 비롯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포기해야하는 상황까지 속출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이나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의 고충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자칫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상수도 단수사태를 보며 시민단체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5만 거창읍민의 생활불편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창군의 행정을 보면서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행정이라면 안 됩니다. 수돗물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치는 행정이라면 정말 위기의 재난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거창군은 화난 민심을 차분히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을 성의 있게 반성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민원처리에 대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거창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진상을 조사하여 책임 있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또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어눌한 행정 탓에 주민들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뼈를 깎는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3. 뿐만 아니라 사태와 관련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2009년 9월 28일

거창YMCA, 함께하는 거창

거창국제연극제의 미래,
거창군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 존중에 달렸다.

보도협조일	2009. 10. 29(목)	연락처	055-942-1117
총 매 수	3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8	(담당:최성식 사무차장 017-596-2397)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거창입니다.

거창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축제인 거창국제연극제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 출발해 활동한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창군이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의 공개를 막고, 당초 약속한 토론회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 거창의 입장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일 시:2009. 10. 29(목) 오전 10:30

■ 장 소:거창군청 브리핑룸

**거창국제연극제의 미래,
거창군의 책임 있는 자세와 ‘결산검사위원회 의견’ 존중에 달렸다.**

거창국제연극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우리 거창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아 왔다. 국제연극제가 거창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의혹과 투명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난해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하여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조 사업비의 자금집행에 대한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창국제연극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2008년도 거창국제연극제 자금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확인, ▶기타 필요 시 그 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 사항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위원회의 활동 목표로 삼았다. 또, 위원회에서 점검·확인한 결과는 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에 발표하고, 위원회 명의로 거창국제연극제진흥회에 통보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 이런 노력이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떨쳐내고,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우리 단체의 신승열 정책위원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당초 이런 약속과는 달리 거창군은 결산검사위원회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5월 19일 위원회에서 거창군에 제출한 보고서를 4개월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함께하는 거창이 지난 8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개하지 않고 열람

만 하게 했다.

더욱 놀랄 일은 결산검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연극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토론회(혹은 공청회)를 10월에 개최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결산검사위원회의 보고서조차 군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지난 10월 22일 참다못한 결산검사위원회가 거창군의 이런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스스로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해산하면서 그 동안의 활동 내용과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각 언론사에 연락해 보도하지 말 것으로 요구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사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보도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실상 언론통제나 마찬가지다.

도대체 거창군은 무엇이 두려워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공개를 행정력을 동원해 막고 있는가?

함께마는 거창은 국제연극제가 거창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창의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본다. 그런데 거창군은 애초 국제연극제에 관련된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구성한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해 공개를 막고 있다. 결국 거창군이 앞장서서 국제연극제와 주민들 사이의 불신과 의혹을 키우고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거창군이 진정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거나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함께마는 거창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거창군에 요구한다.

1. 거창군은 국제연극제 결산검사위원회 활동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고, 토론회(혹은 공청회) 개최 약속을 지켜라!
2. 행정력을 동원해 언론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양동인 군수는 사과하

고, 책임소재 규명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3.양동인 군수는 결산검사위원회 활동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솔직하게 밝혀라!

4.거창군은 국제연극제를 우리 거창의 대표 문화예술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혹 해소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09. 10. 29



참여와 자치의 지역 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함께하는 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 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 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 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 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아는 개항**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아는 개항**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아는 개항**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아는 개항**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아는 개항**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아는 개항**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아는 개항**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의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항**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 개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개최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카페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온라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 (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 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개항**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지도위원,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하는 개항**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지도위원,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하는 개항**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하는 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하는 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 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 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7조(회계연도) **함께하는 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예산 및 결산) 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당해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제29조(수입)

1. **함께하는 개항**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장학사업 특별회계 (2009. 1. 20 신설)

제31조(장학사업의 목적) **함께하는 개항**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회계연도)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수입) **함께하는 개항** 장학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
2. 본 장학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주민 또는 기관, 단체의 자발적 후원금
3. 후원금 모금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4조(지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후원자 모임에서 결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를 정한다. 단, 후원자 모임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35조(사무) 장학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후원자 모임에서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에 간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정관과 내규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제7장 보 칙

제31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밖의 운영위원은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또는 선출직공직에 입후보 할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2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3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 개혁**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 개혁**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2009. 1. 20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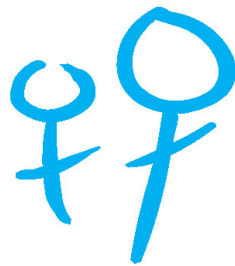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www.gcngo.org